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4. 21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4월 8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: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4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권희자)

가. 제안이유

-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호행장려금의 지급시기를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호행장려금의 지급시기 변경 (안 제7조제5항)
- 조문 체계 간결화 및 의미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
-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- 본 안건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의 지급시기를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임.

- 주요내용은
 - 안 제7조제5항에서는 효행장려금의 지급 시기를 기존의 매년 10월 일괄 지급 방식에서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는 개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였고, 올해 생일이 지난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세대에는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.
 -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지침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음.

- 효행장려금의 지급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10월 일괄 지급보다 생일이 속한 달의 개별 지급이 더욱 합리적이라 사료되며,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해당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 중 만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효행장려금의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부양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함.

나. 수정내용

- 안 제7조제1항 중 “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”을 “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”으로 하고, 부칙 중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효행장려금 금액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하는 것으로 수정함.

5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337 호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1. 4. 19.

제안자: 이미자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해당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 중 만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효행장려금의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부양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- 안 제7조제1항 중 “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”을 “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”으로 하고, 부칙 중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효행장려금 금액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하는 것으로 수정함,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”을 “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”으로 하고, 부칙 중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효행장려금 금액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하는 것으로 한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	중효행장려금 금액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”를 “장려함으로써, 고령사회”로, “경로
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”을 “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
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효행 우수자 표창) 구청장은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
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중 “사람에게”를 “세대에”로 하고, “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”을 “매
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람”을 “세대의 세대주 또
는 세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전산망”을 “행정정보 공동
이용”으로, “적합여부”를 “적격 여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주민등록 등재 여부”를
“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
을 지원하며, 그 사실을”을 “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, 그 결
과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 장려금은 매년
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.

제7조제5항제1호 중 “지원사유”를 “지원 사유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”를 “효행장려 및 효문화 발전(이하 “효행장려 등”이라 한다)을 위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”를 “효행장려 등에 관한 프로그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경로 효친에 대한”를 “효행장려 등을 위한”로, “홍보사업”을 “홍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효 의식 함양”을 “효행장려 등”으로 한다.

[별지서식]의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효행장려금 금액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제7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당해 연도 생일이 지난 부양대상자의 장려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<u>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----- <u>장려함으로써,</u> <u>고령사회</u> ----- ---<u>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</u>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<u>효</u>”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. 2. “<u>효행</u>”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. 3. “<u>부모 등</u>”이란 「민법」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. 4. “<u>경로</u>”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. 5. “<u>효문화</u>”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, 문학, 미술, 음악, 영화,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. 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<u>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</p>
<p>제4조(효의 달)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.</p>	<p>〈삭 제〉</p>

2.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 거주 여부

④ 구청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며,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관리·비치하여야 한다.

⑤ 장려금은 매년 10월에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원사유가 소멸된 경우

2.·3. (생략)

⑥ (생략)

제8조(어르신복지카드제의 운영) ①·

② (생략)

③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10조(지원사업의 범위)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

2.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

2. -----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 구성 -----

④ -----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, 그 결과를 ----- .

⑤ 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. ----- .

1. ----- 지원 사유 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어르신복지카드제의 운영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그 밖에 ----- .

제10조(지원사업의 범위) ----- 효행장려 및 효문화 발전(이하 “효행장려 등”이라 한다)을 위해 ----- .

<삭제>

2. 효행장려 등에 관한 프로그램 --

평가

3.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

4. 그 밖에 효 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. 효행장려 등을 위한-----

- 홍보

4. ----- 효행장려 등-----

-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효행장려금 금액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제7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당해 연도 생일이 지난 부양대상자의 장려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3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4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만 100세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의 지급시기를 부양대상자의 생일달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효행장려금의 지급시기 변경(안 제7조제5항)
- 나. 조문 체계 간결화 및 의미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
- 다.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의거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1. 3. 11. ~ 3. 31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”를 “장려함으로써, 고령사회”로, “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”을 “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효행 우수자 표창) 구청장은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중 “사람에게”를 “세대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람”을 “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전산망”을 “행정정보 공동이용”으로, “적합여부”를 “적격 여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주민등록 등재 여부”를 “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며, 그 사실을”을 “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, 그 결과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.

제7조제5항제1호 중 “지원사유”를 “지원 사유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”를 “효행장려 및 효문화 발전(이하 “효행장려 등”이라 한다)을 위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”를 “효행장려 등에 관한 프로그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경로 호친에 대한”를 “효행장려 등을 위한”로, “홍보사업”을 “홍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효 의식 함양”을 “효행장려 등”으로 한다.

[별지서식]의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제7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당해 연도 생일이 지난 부양대상자의 장려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<u>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을</u>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장려함으로써, 고령사회 -----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</u>----- 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<u>효</u>”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. 2. “<u>효행</u>”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. 3. “<u>부모 등</u>”이란 「민법」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. 4. “<u>경로</u>”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. 5. “<u>효문화</u>”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, 문학, 미술, 음악, 영화,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. 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<u>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</p>
<p>제4조(효의 달)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.</p>	<p>〈삭 제〉</p>

제6조(효행 우수자 표창)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.
 ② 표창 방법, 표창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효행장려금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(이하 “부양대상자”라 한다)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(이하 “장려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 거주 여부

제6조(효행 우수자 표창) 구청장은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7조(효행장려금의 지원 등) ① -----

 ----- 세대 -----

 -----.

② -----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-----
 -----.

③ ----- 행정정보 공동이용 -----
 ----- 적격 여부 -----
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-----

④ 구청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며,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관리·비치하여야 한다.

⑤ 장려금은 매년 10월에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원사유가 소멸된 경우

2.·3. (생략)

⑥ (생략)

제8조(어르신복지카드제의 운영) ①·② (생략)

③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10조(지원사업의 범위)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

2.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

3.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

④ -----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, 그 결과를 -----
-----.

⑤ 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. -----

-----.

1. -----
--- 지원 사유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어르신복지카드제의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그 밖에 -----
-----.

제10조(지원사업의 범위) -----
효행장려 및 효문화 발전(이하 “효행장려 등”이라 한다)을 위해 ----
-----.

<삭 제>

2. 효행장려 등에 관한 프로그램 ---

3. 효행장려 등을 위한-----

홍보사업

4. 그 밖에 효 의식 함양을 위하여
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사업

홍보

4. ----- 효행장려 등-----
